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24일
미래·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년 10월 13일

나. 제안자: 최동철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3년 10월 16일

라. 상정일자: 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23. 10. 24.)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박주선 의원)

제안이유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을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나.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다. 위탁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및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 제4조의2 제20조, 제26조
- 나. 예산조치: 필요 시 편성
- 다. 해당부서: 가족정책과
- 라. 기 타: 입법예고(2023. 10. 16. ~ 10. 20.) 결과: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권오숙)

가. 제정취지

-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 제정내용

- 안 제1조(목적)와 안 제2조(정의)에서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조례의 제정 목적과 법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이돌봄”이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아이돌보미”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에서는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보호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아이돌봄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안 제5조(지원계획)**에서는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명시하고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제5조(지원계획) 구청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조의2에 따라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안 제6조(지원사업)**에서는 돌봄 지원을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아이돌봄 사업, 홍보 등 시행사업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비용지원
2.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 사업
3.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안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에서는 아이돌보미의 처우¹⁾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 ①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8조(위탁), 안 제9조(지도·점검)에서는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서비스제공 기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

제8조(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기관·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원활한 아이돌봄 지원 수행을 위해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아이돌봄 사업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다. 종합의견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2년 「아이돌봄 지원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1) 돌봄종사자 시급 비교 (2023년 기준)

최저임금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	비고
9,620원	9,620원	9,620원	15,570원	

- 본 조례안은 여성의 사회활동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가족형태의 다양화 및 양육환경의 변화 등 아이돌봄 욕구와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제도적 근거 뿐 아니라 양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아이돌봄서비스 】

○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돌봄 대상

-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

○ 강서구 현황

- 강서구 아이돌봄미: 185명(2023.9.30. 현재)
- 아이돌봄미 이용자현황(2023. 7. 31. 기준)

서비스 종류	실이용가정 수	실이용아동 수	월평균 연계 건수	누적 연계 건수
시간제 서비스	394가정	559명	6,640건	46,475건
종일제 서비스	18가정	21명	185건	1,292건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붙임 관계 법령 1부.

□ 「아이돌봄 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19.>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육아도우미”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③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은 서비스의 종류, 해당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